

의안
번호

455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현 속

의안 번호	4558
----------	------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조규식·신혜영 의원(찬성의원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 요지: 별 첨
4. 검토 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3월 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현 숙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6년 3월 9일 조규식·신혜영 의원의 발의와 8인 의원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2026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사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는 심사보조자 제도의 운영 기준, 위촉 절차, 자격요건 및 수당 지급 근거 등을 정비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방청 허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보조자 위촉 절차 명확화(안 제36조제2항)

- 심사보조자의 위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나. 심사보조자 자격요건 정비(안 제36조제3항)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의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자격조건을 준용함

다. 수당 지급 근거 정비(안 제36조제6항)

- 심사보조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
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청권 발행 권한 명확화(안 제46조제1항)

-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방청 허가 권한을 각각 의장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6. 3. 11. ~ 3. 16. (5일간/예정)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정비로서, 기존 기본조례 제36조에서 의정자문위원 자격 기준을 준용하던 심사보조자 관련 규정을, 해당 조례 폐지로 인한 인용 근거 소멸에 따라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 심사보조자 제도의 활용 실적 측면에서는 2010년 이후 위촉 사례가 사실상 없어 활용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안전에 대한 한시적·집중적 전문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근거로서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됨.
- 아울러 위원회 방청 허가 권한에 관하여 본회의 방청은 의장, 위원회 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하도록 권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방청 허가 권한의 귀속이 불분명하였던 부분을 보완함.
- 이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69조1)에서 위원회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도 부합하여, 조례와 회의규칙 간 권한 구조를 정합적으로 일치시킨 조치로 평가됨.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체계 정비 및 권한 구조의 명확화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방청 신청 절차) ① 방청 신청은 신청인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방청신청서를 작성·제출(직접 방문, 팩스) 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 시에는 방청 당일 방청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방청권의 교부) ① 본회의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위원회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